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522호
- 나. 제안자 : 허 훈 의원(찬성자 16명)
- 다. 제안일 : 2024년 1월 26일
- 라.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2024. 1. 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옥외광고물등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정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요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나.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u>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u>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u>설치하는</u>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u>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u></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u>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u>----- ----- ----- ----- <u>표시·설치하는</u>----- -----.</p> <p><u>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나. 검토 내용

(1) 관련 법 개정사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의 개정(2024.1.12.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붙임1),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24.1.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광고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¹⁾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기간만료 시 철거의무를 명시함
- '24.1.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의 보행자·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현수막의 규격, 표시·설치의 기간과 방법을 규정함

1) 전국의 읍·면·동 3,500개 중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192개(5.5%)로, 서울 특별시는 이에 해당되는 행정동은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4.1.12. 시행)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7. 생략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2. 시행)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정당의 명칭
- 나. 정당의 연락처
-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설치할 것

-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 3)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 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례 개정안 검토

-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2022.12.11. 시행)에서는 게시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개수제한이 없고 표시방법과 기간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증가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가 개정(2023.12.14. 시행)됨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 조례 제11조의2가 「옥외광고물법」(법제8조, 시행령 제35조의2)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 외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의 요구(2023.12.13.)²⁾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24.1.12. 시행)되어 게시 가능한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표시·설치 가능한 장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종전의 ‘설치’를 ‘표시·설치’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조례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 ----- ----- ----- ----- 표시·설치하는 ----- -----.

- 현행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는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음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2120,2023.12.13.)」 조례안(제11조의2)검토의견 ①옥외광고물법령(법 제8조, 시행령 제35조의2)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 외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 28조 및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위반, - 또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8조, 제21조 및 정당법 제37조 위반 소지가 있음

-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가목에서 동별 면적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서초구 면적이 약 47제곱킬로미터이므로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 해당사항은 없다 하겠음

현행	개정안
<p>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p>	<p>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p>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2024.1.12.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를 ‘표시·설치’로 자구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에서 ‘행정동별 2개 이내’로 개정하며,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2024.1.12. 시행) 개정사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현수막 개수를 규정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례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하며 조례 집행과정에서의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 전	개정 후(2024.1.12.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p>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 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정당의 명칭
- 나. 정당의 연락처
-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설치할 것

-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